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



□ 안내 개요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비상진료 지원 수가 산정 및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수가 산정 및 청구 방법 안내

- 명세서 청구 방법
- (입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해당 수가** 적용일부터 명세서 전체 건을 분리 청구하여야 함
- (외래) 기존 청구방법과 동일

○ 비상진료 수가 및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 간 산정 방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를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상진료 수가 산정 가능함
 - ① (응급진료)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일부 비상진료 수가를 함께 산정 가능
 - ② (의뢰·회송) 협력기관 이외 또는 진료협력기관 중 전문회송료 이외 경우는 비상진료 수가 산정 가능
 - * 수가별 세부 산정방법 및 적용 예 참조

□ 항목별 수가 산정방법

- (응급진료)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 권역·전문·외상·지역 100% 가산 항목은 IF수가(IF200~IF209) 적용
 - ·50% 추가가산(IE300~IE309, '24.8.28.~), 100% 추가가산(IE310~IE319, '24.9.11.~)은 비상진료 수가 적용 유지
- 응급의료행위 (별표3) 가산
 - · 권역·전문·외상 50% 가산 항목은 IF수가(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2), 지역 150% 가산 항목은 IF수가(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1) 적용
 - · 50% 추가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3, '24.9.11.~)은 비상진료 수가 적용 유지

구분	비상진료 지원대책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권역·전문·외상) 250%= 100%+50%+100% (예: V2200+ IE200 + IE300 + IE310) (지역) 150%= 100%+50% (예: V2300 + IE203 + IE303)	(권역·전문·외상·지역) 100% (예: V2200 + IF200)
응급증증 수술 (별표3) 추가산	(권역·전문·외상) 100%=50%+50% (예: M66150D0 + IEM66150 + IEM66153) (지역) 200%=150%+50% (예: M6615 + IEM66151 + IEM66153)	(권역·전문·외상) 50% (예: M66150D0 + IFM66152) (지역) 150% (예: M6615 + IFM66151)

구분

비상진료기간 중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응급진료 산정 방법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권역·전문·외상) 250%= 100%+50%+100%

(예: V2200+ IF200 + IE300 + IE310)

(지역) 150%= 100%+50%

(예: V2300 + **IF**203 + **IE**303)

응급증증 수술 (별표3)

추가가산

(권역·전문·외상) 100%= 50%+50%

(예: M66150D0 + IFM66152 + IEM66153)

(지역) 200%= 150%+50%

(예: <u>M6615</u> + <u>IFM66151</u> + <u>IEM66153</u>)

- (중증 수술·마취, 입원료, 전문의 등)
- 중증수술·마취, 입원료, 전문의는 모두 구조전환 지원수가(IF□ □□코드)로 산정
- 단, 의뢰·회송은 비협력기관, 협력기관 중 전문회송 이외는 비상 진료 수가(IE□□□코드) 산정 가능

항목	비상진료 지원대책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중증 수술		없음			중증 수술 가산 (예: IF N7136 0)							
마취	BA CI						중중 수술 동반 마취 가산 (예: IF <u>L1211</u> 0)					
									* 입원	료에 정액 가	<u> </u>	
		-	ᇹᆽᅿᅱ	0101 11		["	중:	환자	실 (IFOC)1)	30만원	
입원료		Ť		· 입원 ㅂ 보상 시범			특	수병	실 I (IF	002)	20만원	
	(전문진료질병군 입원료 100% 보상)						특	수병	실Ⅱ (IF	003)	10만원	
										인실) [*] (IF 005)	7.5만원	
						* 12	<u>l</u> 실,	5인	실 이싱	은 산정 불가		
	중환자실		중전의	일	당 2.5만원 (I E 005)	박당 5.0만원 (I F 011)						
저무이			전문의	일	당 2.5만원 (I E 004)	박당 2.5만원 (IF012)						
전문의	일반병동		전문의	일	당 2.5만원 (I E 001)	박당 2.5만원 (IF 012, 입전의 3형포함)						
			입전의		당 1.25만원 입전의 1~3형)	박당 1.25만원 (IF 013, 입전의 1~2형)						
	의 뢰			없음		의뢰	의뢰 의뢰료 I +((ㅍ or ㅍ)+IF101+지역가산		
		Т	입원	IE 011	96,620원			I	입원	AE011+ IF 111	97,410원	
의뢰	회	-	외래	IE 012	72,460원		협 력	-	외래	AE012+ IF 112	73,310원	
회송	의 송		입원	IE 021	106,180원	회송	기 관		입원	AE021+ IF 121	106,790원	
		П	외래	IE 022	82,450원		"	П	외래	AE022+ IF 122	82,960원	
	3	회송환 관리	;		없음	화	송환기	다 괸	리료	IF 103	15,000원	

□ 수가별 세부 산정방법 및 적용 예

①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세부 산정 방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비상진료 지원방안으로 '24.2.20일부터 적용 중인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가산 수가 (IE200~IE209) 산정 불가
- 다만, 코로나19 유행 대비 '24.8.28.부터 적용 중인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및 추석연휴 대비 '24.9.11.부터 추가 인상 적용 중인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수가는 시범사업 수가와 함께 산정 가능
-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예시

항	목	줄번호	수가	코드구분	단가	일투	금액
01	03	1	(본수가)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	V2200	41,540	1	41,540
01	03	2	(상종구조전환)응급진료 전문의진찰료 가산	IF200	41,540	1	41,540
01	03	3	(비상진료지원방안)응급 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IE300	20,770	1	20,770
01	03	4	(비상진료지원방안)응급 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IE310	41,540	1	41,540

②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세부 산정 방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비상진료 지원방안으로 '24.2.20일부터 적용 중인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가산 수가(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0 또는 1) 산정 불가
- 다만, 추석연휴 대비 '24.9.11.부터 추가 인상 적용 중인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가산 수가(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3)는 시범사업 수가와 함께 산정 가능
-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가 24시간 내 늑골골절관혈적 정복술을 실시한 경우

예시

항	목	줄번호	수가	코드구분	단가	일투	금액
08	01	1	(본수가)늑골골절관혈적 정복술	N05320D0	934,210	1	934,210
08	01	2	(상종구조전환)응급의료 행위 별표3 추가가산	IFN05322	233,550	1	233,550
08	01	3	(비상진료지원방안)응급 의료행위 별표3 추가가산수가	IEN05323	233,550	1	233,550

③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세부 산정 방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비상진료 지원방안으로 '24.2.20일(중증입원환자는 '24.3.11일)부터 적용 중인 (중증)입원환자 비상 진료 정책지원금(IE001, IE002, IE004, IE005) 산정 불가

• 일반병동 4인실에 입원한 환자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항	목	줄번호	수가	코드구분	단가	일투	금액
02	01	1	(본수가)상급종합병원1등급간호 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AB1J1	131,400	1	131,400
02	99	2	(상종구조전환)일반병실 기능강화 정책수가	IF005	75,000	1	75,000
02	99	3	(상종구조전환)입원환자 전문관리 정책수가Ⅱ	IF012	25,000	1	25,000

예시

• 일반병동 5인실에 입원한 환자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항	목	줄번호	수가	코드구분	단가	일투	금액
(02	01	1	(본수가)상급종합병원1등급간호 관리료적용5인실입원료	AB1E1	106,770	1	106,770
()2	99	2	(상종구조전환)입원환자 전문관리 정책수가Ⅱ	IF012	25,000	1	25,000

참고 청구방법 관련 질의·답변

연번	질 의	답 변
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를 산정하지 않아도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수가 산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사업일 이전과 이후의 내역 전체를 분리청구 해야함 (지원사업 시작일이 퇴원일인 경우도 분리청구 필요)
		다만, (신)포괄수가제 적용 건은 분리하지 않고 한 건으로 청구하되, 적용일자 기재 필수임
2	질병군 포괄수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동일하게 적용함 입원료, 전문의 관련 시범수가는 동일하게 박당으로 산정함 - 응급진료 및 중증수술 등은 포괄수가에 반영된본 수가는 L항에, 별도보상 되는 비상진료 수가및 시범수가 등은 1-10항에 기재

지원방안별 문의처

번호	지원방안	문의처	연락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2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1513, 1520		
3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1	전문 의뢰·회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5~6		
4	· 년군 ᅴ푀·푀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